

『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중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4월 3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5월 7일

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객관적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설정 필요
- 부과징수에 관한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와 공공하수도 신·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현실화(현재 '95년 부과기준 적용)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부과기준 공고
 -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
 - ㎡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
 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
-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개정
- 하수도법에 의한 가산금 징수 기준

라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하수도법 제 24조, 제 24조의 2, 제 24조의 3, 제 32조, 제 38조
- 환경부 훈령 제 5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(2002. 1. 14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○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의 적정성을 기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'95년도 부과기준을 공공하수도 신.증설에 필요한 비용부담 현실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훈령 제5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(2002. 1. 14)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,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, 하수도법에 의한 가산금 징수 기준등 임.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